



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 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4월 29일

영광군수권한대행  
부 군 수

김 상 은

영광군 훈령 제428호

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. 끝.

##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**담당**”을 “**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담당을**”을 “**팀을**”로, “**담당에**”를 “**팀장에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담당은**”을 “**팀장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담당**”을 “**팀장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**담당별**”을 각각 “**팀별**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담당별**”을 각각 “**팀별**”로, 같은 항 중 “**담당에**”를 “**팀에**”로 한다.

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영광군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**담당**”을 “**팀장**”으로 한다.

영광군어선안전조업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산진흥업무담당주사”를 “수산진흥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영광군건설공사종합추진기획단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건설행정업무팀장”으로, “도로업무담당주사”를 “도로업무팀장”으로, “기반조성담당주사”를 “기반조성팀장”으로, “상수도업무담당주사”를 “상수도업무팀장”으로, “하수도업무담당주사”를 “하수도업무팀장”으로, “재반방재업무담당주사”를 “재반방재업무팀장”으로, “건축담당주사”를 “건축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영광군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축산업무담당주사”를 “축산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3호 중 “원예특작업무담당주사”를 “원예특작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4호 중 “수산정책담당주사”를 “수산정책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농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농정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8호 중 “원예특작업무담당주사”를 “원예특작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9호 중 “축산업무담당주사”를 “축산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10호 중 “수산정책담당주사”를 “수산정책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영광군 게스트하우스 관리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, 제7조제2항, 제7조제3항 중 “재산관리담당”을 각각 “재산관리팀장”으로 한다.

영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2호 중 “소관업무 담당”을 “소관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영광군 읍면 사무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 중 “담당”을 각각 “팀장”으로 한다.

별표의 기안 및 전결권자란, 제1호가목1), 제1호나목1), 제1호다목1), 제2호가목1) 중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별표의 제3호 중 “담당”을 “팀”으로 한다.

영광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노인복지담당주사” 를 “노인복지업무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담당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총괄담당주사” 를 “안전총괄업무팀장” 으로 개정한다.

영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감사법무담당” 을 “감사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” 을 “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기획의회담당” 을 “기획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지역방호협의회 설치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원전관리담당이” 를 “원전관리팀장이” 로 한다.

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보직(담당)” 을 “보직(팀장)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감사업무 담당” 을 “감사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” 을 “업무팀장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우수 담당 및 담당자” 를 “우수 팀장 및 담당자” 로 한다.

영광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5항 중 “기록물관리 업무담당” 을 “기록물관리 업무팀장” 으로 한다.

영광군발간실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무담당내에” 를 “서무팀내에” 로, “서무담당이” 를 “서무팀장이” 로 한다.

영광군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전산통신담당주사는” 을 “정보통신팀장은” 으로 한다.

영광군보육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 를 “해당업무 팀장으로” 한다.